

UNCITRAL 國際倒産 모델法案의 최근 동향¹⁾

Recent Developments on UNCITRAL Model Legislative Provisions on Cross-Border Insolvency

장 문 철^{*}

I. 서 론
II. UNCITRAL의 관련법안 작업배경
III. 우리 현행법체계와 국제도산법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안
IV. 모델법안의 내용
1. 모델법안의 형식
2. 서 문
3. 적용범위
4. 용어 정의
5. 관할 법원(또는 기관)
6. 공서규정
7. 외국관리인과 채권자의 내국법원 이용
8. 외국절차의 승인과 구제
9. 외국법원 및 외국관리인과의 협력
10. 동시병행절차
11. 채권자에 대한 지급비율
V. 국제도산법의 모델법에 대한 전망과 입장
VI. UNCITRAL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 입법초안
VII. 본고와 직접 관련된 UNCITRAL 주요 자료

* 경찰대 교수.

1) 본고는 필자가 1996. 5. 28~6. 14에 뉴욕에서 개최된 제29차 UNCITRAL 정기총회와 동년 10. 7~18에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0차 국제도산법 실무회의(working group)에 한국 정부대표로 참석한 후, 국제도산법 성문화작업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과 해석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특히 UNCITRAL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준 외무부와 국제교류재단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이 글에서 밝힌 견해는 필자 개인적인 것이며 모든 책임은 필자 자신에 있음을 밝힌다.

I. 서 론

지난 30여 년간 유엔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는 국제상사증재, 국제물품매매, 국제물품운송 등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관련법질서의 국제적인 통일화와 조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최근 많은 국가들의 관심속에 UNCITRAL이 초안 작성 중에 있는 과제 중 하나는 國際倒產 모델법안(Model Legislative Provisions on Cross-Border Insolvency)이다. 이 분야에 관한 국제협약으로는 이미 유럽연합이 주축이 되어 성문화한 바 있으며, 성공적이지는 않으나 일부 유럽국가들에 의해 소위 이스탄불조약이 작성된 바 있다. UNCITRAL의 모델법안은 아마도 많은 비유럽국가들 중에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도산에 관한 법체계가 미비한 국가들에게 많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본다.

모델법안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즉, 국제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상인들이 도산에 이를 경우, 그들의 재산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소재하고 있다면 그 국제도산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쟁점사항들은 (i) 먼저 어떤 법원이 해당 도산절차에 관할을 갖는가 (ii) 만일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외국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이 일부 소재하는 국내에서 효력이 있는가 (iii) 또한 내국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일부 재산이 소재하는 외국에 효력을 미치는가 (iv) 외국 도산관리인이나 법원은 내국 법원에 어떤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가 (v) 도산절차가 외국과 내국에서 동시에 진행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이다. 각국의 도산절차와 관계법질서가 다르므로 더욱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UNCITRAL의 국제도산 모델법안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작업된 결과를 중심으로 그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UNCITRAL의 관련법안 작업 배경

“國際倒産²⁾에 관한 유엔 무역법위원회 모델법안”(draft UNCITRAL Model Legislative Provisions on Cross-Border Insolvency)은 1992년 뉴욕에서 열린 “21세기의 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Law in the 21st Century)이라는 주제하의 UNCITRAL 학술대회에서 제안된 내용에 따라 착수되었다. 그 후, 1994년 4월 비엔나에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와 INSO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olvency Practitioners)이 공동으로 국제도산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 분야의 작업 가능성과 범위 등에 관해 토의한 바 있다. 또한 1995년 3월 토론토에서 각국의 법관들이 모여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INSOL 법률세미나를 열어 먼저 제안된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외국법원의 협조와 접근 및 승인”에 관한 UNCITRAL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그간 두 차례의 실무회의(1995. 10. 30 ~11. 10, Vienna; 1996. 4. 1~12, N.Y.)에서 작성된 모델법안은 비엔나에서 1996. 10. 7~18에 개최된 제20차 실무회의에서 더욱 다듬어졌다.

이후 제21차 실무회의를 뉴욕에서 1997년 1월 말에 개최하여 더 정리한 후에 동년 5월 중에는 비엔나의 UNCITRAL 정기총회에서 모델법안이 채택될 것으로 관망된다. 그런데, 국제도산법안은 모델법안의 형식으로 작성할 것인지 국제협약으로 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아 일단 모델입법안(Model Legislative Provisions)으로 표현하기로 하였다. 그간 실무회의에서 작업한 주제는 국제도산법과 관련된 용어 정의, 외국절차의 승인, 승인으로 인한 구제, 외국도산절차 대리인을 위한 법원이용의 유형, 법원의 협력에 관한 규정들이다.

2) Insolvency Law에 관한 우리나라 설정법으로는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이 있다. 따라서 Cross-Border Insolvency Law는 위의 세 가지를 포함하는 용어로서 국제도산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로 일본은 국제도산법으로, 중국은 국제파산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용어로서 도산이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제도산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최근 독일에서는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을 모두 포함하는 Insolvenzordnung을 1994. 10. 5 제정하여 1999. 1. 1 발효된다.

III. 우리 현행법체제와 국제도산법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도산에 관한 실정법으로 파산법, 회사정리법과 화의법이 있다. 파산법은 자연인이나 법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가지고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하여 청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다.³⁾ 그간 파산제도가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소비자파산의 신청이 보도된 바 있어 이제 이 제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⁴⁾ 한편, 회사정리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객관의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⁵⁾ 근래 회사정리절차는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화의법은 파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인이나 법인 등 이해 당사자들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이 모든 국내법들이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가 되면 될수록 한층 더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실정법들이 모두 국내도산 또는 국내파산에 적용되는 실정법이며 국제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국제도산법체계로서는 뒤떨어지거나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규정은 파산법 제3조(속지주의)와 회사정리법 제3조(외국인의 지위), 제4조(속지주의)에 관한 규정이다. 독일법이나 일본법의 영향을 받은 당규정은 파산선고나 회사정리절차에 관해서는 한국

3) 파산법은 374개조로 구성된 방대한 실정법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독일 파산법을 모델로 제정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별로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 사회가 절차 신용카드나, 리스제도들이 정착되어 고도의 신용사회가 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 파산법도 많이 이용될 전망이다.

4) 40대 주부가 거액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자 자신의 사회적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빚을 탕감해달라는 파산선고 신청을 1996. 12. 10 서울지법에 제출하였다. 중앙일보 1996. 12. 11, 23면.

5) 회사정리법 제1조 참조 회사정리법은 29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파산법 제11장을 모델로 제정되었다고 한다.

내에서 개시한 절차나 선고는 한국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외국에서 선고되었거나 개시한 절차는 한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강한 속시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법 선고 96 기합 27402(제12민사부)에 의하면 해당조항의 속지주의 원칙을 완화하여 한국에 있는 재산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바 있어 앞으로는 관련법 해석의 대법원의 입장이 주도된다.”

IV. 모델법안의 내용

1. 모델법안의 형식

국제도산법 질서가 각국의 서로 다른 법체계에도 불구하고 통일적인 운영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으로 채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특히 국제적인 사법공조 내시 법원의 협력이 필요하나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국제도산과 관련해서 법원의 협력을 요청할 때 많은 국가들의 도산법에서는 상호보증(reciprocity)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때에도 국제협약이 채택된다면 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협약의 실행에 이런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성이 미약하다면 모델법안의 형식으로라도 UNCITRAL에서 국제도산법 체계가 없거나 개정해야 할 국가들을 위하여 법안을 채택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도산법의 국제적 통일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주장이 각국 대표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다.⁶⁾ 따라

-
- 6) 본 사건은 피고 중 하나인 “파울로 구씨”사가 한국에 등록한 상표사용권과 관련된 것이다. 파울로 구씨사가 미국에서 파산절차에 있게 되자, 우리나라에서 그 상표를 사용하기로 최종적인 계약을 맺었던 원고들이 상표사용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고(국내 수입업자도 포함됨)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다. 즉, 외국도산절차와 그 관리인의 국내에서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관련되었다.
- 7) 이 집과 관련하여 제20차 국제도산법 실무회의에서는 스페인 대표를 위시하여 각국의 장황한 입정 발표가 있었다. 독일, 프랑스, 페네란드, 네덜란드 등이 타국의 법원의 협조 등에 회의적이며 지나치게 야심이 크다는(ambitious) 회의론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성가 노르, 이란, 인도 등을 모델법으로서 각국에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적이었다. 다수의 의견은 이 법안이 협약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어렵지만, 모델법으로서 각국에

서 국제협약으로 채택될 기회를 완전히 봉쇄하지는 않은 채, 일단 현재로서는 국제도산법안 작업 실무그룹은 모델법규정안(draft Model Legislative Provisions) 이란 명칭으로 법안을 성문화 작업 중에 있다.⁸⁾

2. 서문(Preamble)

모델법안의 목적은 (i) 국제도산에 관련된 내국과 외국의 법원 및 관할기관 간의 협력 (ii) 거래와 투자의 법적 확실성 (iii) 모든 채권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할 국제도산절차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iv) 채무자의 재산가치의 보호와 최대화 (v) 재정적 궁핍에 빠진 사업의 구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도산에 관한 효과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모델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외국관리인과 채권자의 내국법원 이용(Access), 제3장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구제수단, 제4장 외국법원 및 외국관리인과의 협조, 제5장 동시병행절차의 순으로 23개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적용범위(제1조)

모델법안이 적용되는 범위는 (i)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외국법원이나 외국관리인이 내국에 협조를 구할 경우, (ii) 내국에서 행한 도산절차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협조를 구할 경우, (iii)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외국절차와 내국절차가 동시에 행해진 경우, (iv) 외국에 있는 채권자나 이해관계자가 내국에서 도산절차를 개시하거나 참가하기를 요청할 이익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 규정은 결국 다음에 정한 각 조문의 내용을 지적할 뿐 그 자체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모델법안의 적용범위를 간단명료하게 설정한다고 삽입시키기로 하였다.

국제도산법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8) A/CN.9/433, p.6, para 18ff.

4. 용어 정의(제2조)

모델법에 독특한 정의들 중에 하나는 foreign main proceeding(외국의 주된 절차)와 foreign non-main proceeding(외국의 비주요 절차)의 구별이다. 전자는 채무자의 주된 이익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에서 행하는 절차를 말하고, 후자는 채무자의 사업장소인 영업소가 있는 국가에서 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유럽연합 국제도산법 협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⁹⁾ 주된 절차와 비주요 절차의 구별은 제13조, 제16조, 제17조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으며 해당 조문 해설시에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제2조 (a)항의 “외국절차”(foreign proceedings)의 정의와 관련하여 본법의 적용에서 소비자파산(consumer insolvency)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부분 국가들의 도산법에는 소비자파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기로 하았다.¹⁰⁾

5. 관할 법원(또는 기관)(제4조)

외국절차 승인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국제관할의 존재이다. 그러나, 모델법은 도산절차의 국제관할에 관해 직접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만 외국 절차의 승인과 외국법원과의 협력에 관한 기능은 각국의 법체계에 따라 특정 법원이나 기관에 맡긴다고 정하였다.¹¹⁾ 이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조문은 제13조(구제수단을 얻기 위한 외국절차의 승인)와 제21조(외국법원 및 외국관리인과의 협조)이다. 간접적으로 제13조의 규정으로 추론해보면 모델법안이 상정하고 있는

9) EU 국제도산법에서는 영업소가 있어 도산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secondary proceeding 이라고 정하고 있다. (동 협약 제3조 3항) A/CN. 9/419 paras 70 ff.

10) 소비자파산을 배제하자는 주된 이유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각국은 이를 포함하는 모델법안을 채택하기를 꺼릴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이다. A/CN. 9/433, para 34~37.

11) UNCITRAL 모델법안은 유럽연합 협약과는 달리 외국절차 승인의 관할에 관한 규정이 제13조와 16, 17, 21조에 국제관할을 전제로 외국절차 승인 및 주된 절차, 비주요절차 등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관할은 동조 3항 (a), (b)에 의하면 “주된 도산절차”(foreign main proceedings)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된 이익이 집중된 장소의 국가에 있으며, “비주요절차”(non-main proceeding)의 관할은 모델법에서 말하는 영업소(establishment)가 있는 장소의 국가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적으로 “유럽연합 도산절차에 관한 협약”(EC Convention on Insolvency Proceedings) 제3조에서는 국제관할에 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채무자의 주된 이익의 중심지가 도산절차를 개시할 관할을 갖고, 주된 이익 중심지와 다른 국가에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도산절차를 개시할 관할이 있다. 후자의 경우의 도산절차를 “부수절차”(secondary proceedings)라고 한다.

6. 公序規定(제6조)

모델법안은 “본법상의 어떤 규정도 내국의 공서에 [명백히](manifestly) 반하면 법원은 그 규정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²⁾ 영미법계의 국가들에서는 공서규정과 관련하여 내국의 공서에 “명백히”(manifestly) 반하는 경우에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방식에 익숙하지만, 소수 의견은 “명백히”的 의미가 추상적이라고 불만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서규정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일치하고 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명백히”를 괄호안에 놓은 것이다.¹³⁾

7. 외국관리인과 채권자의 내국법원 이용(제2장, 제7~12조)

제2장은 외국도산관리인과 채권자들이 내국의 법원에서 법률상의 협조를 받

12) 20차 실무회의에서 “manifestly”란 용어를 삭제할 것을 주장하는 대표도 없지 않았으나 다수의 의견은 그대로 두자는 입장이었으며, 그 용어를 괄호안에 넣어 옵션으로 하자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13) 특히 중국 대표는 manifestly란 용어가 자국법에 낯설다는 입장에서 용어의 포함에 반대하였다. 한편, 이에 대하여 중국의 법질서가 자국의 공서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외국도산 절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용될 우려를 하는 견해도 있었다.

고자 할 경우에 적용될 일련의 규정들이다. 이 규정들(제7조, 9, 20조)의 목적은 외국관리인이나 채권자가 외교채널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본법상의 관할법원에 보전조치를 신청하거나 도산절차의 개시, 참여 개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¹⁴⁾

또한 외국채권사도 내국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도산절차를 개시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11조), 도산절차 개시의 통지도 외국채권자 개개인에게 하여야 한다(12조).¹⁵⁾ 외국채권자의 도산절차 관여시에 채권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조세나 사회보장 의무(foreign tax and social security obligation)를 제외시킬 것인지 아직 결정짓지 못했다.

8. 외국절차의 승인과 구제(relief)¹⁶⁾(제3장, 제13~20조)

(1) 외국절차의 승인 신청(제13조)

외국도산절차는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관리인이 외국절차 승인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가능하다. 모델법안에서는 외국 도산절차와 외국관리인의 승인신청은 (i) 외국절차의 개시와 외국관리인의 선임을 결정한 정식으로 인증된 판정문 (ii) 외국절차와 외국관리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외국법원의 증명서 (iii) 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증명 등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제4조 참조). 이러한 신청에 대해 도산절차의 외국절차의 관할에 따라 그 절차가 채무자의 주된 이익이 집중되어 진행되었다면 “주된 외국절차”로, 단지 영업장소가 있어 그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비주요 절차”로 분류된다. 이 분류는 승인의 효과, 즉 보전처분 및 구제(relief)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 있다.

14) 추후 제7조는 제4조의 관할법원 규정에 합할 여지도 있는 규정이다. 만일 합할 경우라면, 이 규정은 제4조에서 언급한 법원에 직접 외국절차 승인을 신청하거나 보전조치를 구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A/CN.9/WG.V/WP.48, p.10.

15) EU Convention on Insolvency Proceedings art.40(1)과 유사함.

16) 여기에서는 relief를 “구제” 또는 구제수단이라고 번역하였다. 그 이유는 relief는 “보전처분”을 포함하여 외국절차의 승인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구제나 구제수단을 포함하기 때문에 좀 낯설지만 일단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서 “승인”(recognition)이란 용어는 유럽연합 협약에서 규정한 “승인의 효과”(effects of recognition)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¹⁷⁾

(2) 승인 거부의 근거(제14조)

외국절차와 관리인 선임의 승인은 본법에서 정의하는 “외국절차”(foreign proceeding)이나 “외국관리인”(foreign representative)이 아닌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내국에서 채무자의 도산이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특정한 채무자일 경우에도 승인은 거부될 수 있다. 은행, 보험회사, 투자기관 등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도산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도산”(consumer insolvency)도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으나 아직 해결을 짓지 못해 규정에 넣지 못하였으며 추후 더 논의될 예정이다.

(3) 외국절차의 승인 신청시의 구제(relief)(제15조)

시기적으로 외국절차 승인결정 전이라도 외국관리인에게 잠정적 구제를 인정하는 것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모델법안은 외국절차의 승인 신청시부터 승인 결정이 있을 때까지 내국법원은 후술할 제17조에서 규정된 구제수단을 인정할 수 있으며 외국관리인에게 잠정적 구제수단의 요청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구제수단은 원칙적으로 승인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유효하다.

(4) 외국의 주된 절차(foreign main proceeding) 승인시의 구제(제16조)

승인의 효과 또는 승인시의 구제(relief)로서 소위 “최소한의 효과”(minimum effects)를 열거하자는 방식이 모델법안에서 도입되었다. 먼저 외국의 주된 절차의 신청시에 인정되는 구제수단은 채무자의 재산, 권리, 의무 또는 책임에 대한 개별적인 소 또는 절차의 개시 또는 계속을 중지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의

17) A/CN.9/433, para. 102. 이 점과 관련하여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승인이란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20차 회의에서 제기된 바 있다.

양도, 처분 또는 담보 등의 권리가 정지된다. 외국의 주된 도산절차의 승인의 자동적인 효과로 정한 규정이다.¹⁸⁰⁾

개별적인 소를 정지시키는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이 개별적인 소에서 명한 집행처분으로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채무자의 재산의 양도나 담보 등을 정지하는 이유는 그 재산의 가치나 온전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 “개별적인 소나 절차”(actions or proceedings)는 법원의 소송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한 것이다.

어떤 국가의 법체제에서는 개별적인 소를 중지하거나 재산을 동결하는 경우 그 요건이 엄격한 경우도 있으므로 소의 중지나 재산의 동결은 각 국내법의 제한이나 예외적인 조건하에 인정된다고 정하였다.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법원은 외국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현금화, 분배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5) 외국의 주된 절차나 비주요절차의 승인시에 인정되는 구제(제17조)

주된 절차나 비주요절차 승인시에 외국관리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술한 제16조 (1) (a) 또는 (b)하에서 개별적인 소의 중지를 허락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의 양도, 담보 등을 정지 할 수 있다. 또한 제15조에 따라 외국절차 승인전에 인정된 구제수단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외국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시키거나 관리를 위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비주요절차에 대한 구제수단이 외국의 주된 절차 진행에 해가 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6) 승인의 통지와 그 구제(relief)의 통지(제18조)

외국관리인은 전술한 외국절차의 승인이 있었으면 이와 함께 인정된 보전처분 또는 구제에 관한 통지를 일정기일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둔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 관한 요건 등을 법원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180) A/CN.9/433, para.123.

(7) 채권자와 채무자의 보호(제19조)

모델법안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앞서 말한 구제 또는 보전처분들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때에 그들이 부당한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았으며 주장과 방어를 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졌다고 법원이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그러한 구제수단 때문에 해를 입은 자들이나 법인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법원은 그 구제수단을 수정하거나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8) 외국관리인의 내국에서 진행중인 소에 개입(제20조)

외국관리인은 국내법의 조건하에 채무자가 당사자인 소송에 개입할 수 있다. 이 규정 역시 외국관리인이 외교채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소송에 개입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 규정은 제9, 10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내용상으로는 제7조와 함께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9. 외국법원 및 외국관리인과의 협력(제4장, 제21조)

본 조문은 국내법원에게 외국법원이나 외국관리인과 최대한의 협조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외교채널을 통하지 않고 외국법원이나 외국관리인과 직접 의사전달을 할 수 있으며 정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파산이나 회사정리를 관리하는 자나 기관도 그러하다. 그 협력의 내용은 (i) 법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자의 선임 (ii) 법원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방법으로 송달 (iii) 채무자의 재산 관리 및 감독 (iv) 도산절차 순서배정에 관한 법원의 승낙 또는 집행 등이다.

10. 동시병행절차(제5장 22조)

모델법안 제22조는 외국의 주된 절차를 승인한 경우에도 법원은 만일 채무자의 재산이나 영업소가 국내에 있다면 그 채무자에 대해 병행하여 도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내국에서 진행된 도산절차의 효과는 국내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과 영업소에만 미친다. 같은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중복하여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다.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채무자의 주요 이익이 집중되어 도산절차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내국에 재산이나 영업소가 있는 경우 국내법원은 도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 유럽연합 도산법 조약 제3조(국제관할)와 같이 관할에 관해 정의하면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¹⁹⁾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한 일단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되어 국내에서 승인되었다면, 국내에서도 제한된 범위에서 같은 채무자에 대해 도산절차를 개시할 경우, 일단 그 채무자는 도산상태에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1. 채권자에 대한 지급비율(제23조)

같은 채무자에 대해 다수 국가에서 도산절차가 진행될 경우, 먼저 도산절차에서 채권의 일부를 지급받은 채권자는 타국에서 진행된 다른 도산절차에서 같은 채권에 대해 다시 지급받지 못한다. 단, 그 채권자가 이미 받은 지급액이 같은 순위의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보다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러하다.

19) A/CN.9/433, para 175

V. 국제도산법의 모델법에 관한 전망과 입장

파산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국내 파산제도가 거의 이용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비로서 소비자 도산제도에 관심이 일기 시작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도산과 관련해서 회사정리절차를 이용하는 수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거래 및 금융거래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국민이 채권자나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됨에 따라 국제도산법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이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에 왔으며 국제기구에 의한 이 분야의 통일법 작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UNCITRAL에서 작업중인 “국제도산법에 관한 모델법안”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모델법안에 지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모델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흡한 현행 우리 법체계를 보완하는 데 큰 영향을 줄 뿐 있을 것 같다. 서양법 계수에서 우연히 수입한 19세기 말의 독일법상의 파산법의 원리는 주권국가의 입장만을 강조한 것으로 현대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도의 수출주도국으로서 국제경제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부적절하거나 미비하다. 특히 우리 실정법의 흠결로 국제채권채무관계가 국제관행에 따라 문제가 해결된다면, 결국 통일화된 국제도산법 체계는 우리 수출입 국제거래질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모델법의 방향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UNCITRAL 국제도산 모델법안”的 추세에 우리나라 법체계를 맞추는 것이 국제거래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유리할 것 같다. 세계 각국은 현재 국내도산법뿐만 아니라 국제도산법 정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협회법이나 국제민사소송법 체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UNCITRAL 국제도산 모델법안의 작성과정에 적극 참가하여 이 분야의 각국의 입법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도 반영하는 것이 국제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나 투자가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셋째, 현재 작업중인 국제도산 모델법은 우리 법학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법시험 과목의 위주로 법학과목이 개설되고 주로 연구되고 있는 법학계의 현실에서 국제도산법 분야는 현실적으로는 필요하지만 학계에서는 이에 관한 자료와 경험도 없으며 연구인력도 부족한 현시점에서 UNCITRAL 모델법 작성과정에서 풍부한 자료와 최근의 경향을 접할 기회를 주어 이 분야의 법학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넷째, 국제도산 모델법의 작업은 결국 국제상사법의 통일화에 기여하는 바 크다고 본다. 이미 1992년 5월 “21세기 통일상법”이란 주제로 열린 UNCITRAL 학술대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제도산 모델법은 미래의 통일상법의 하나로 작업중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 분야의 실정법체계가 미흡한 국가들은 결국 이 모델법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델법은 이 분야의 통일상사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VI. UNCITRAL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 입법초안²⁰⁾

서 문

제1장 총 칙

제1조 적용범위

제2조 정의와 해석규정

제3조 내국의 국제적 의무

제4조 관할법원 또는 기관

제5조 외국에서 활동하는 [도산절차를 집행하는 자나 기관]의 권한

제6조 공서조항

20) 제21차 국제도산법 실무회의(96. 10. 7~18)에서 새로 개정된 A/CN.9/WG.V/WP.48)을 근거로 함.

모델법안의 번역은 필자 자신에 의한 것이며 이에 관한 오류에 관해서는 모두 필자의 책임하에 있다.

제2장 외국관리인과 채무자의 내국법원 이용(access)

- 제7조 외국관리인의 내국법원 이용
- 제8조 제한된 관할
- 제9조 외국관리인에 의한 도산절차의 개시
- 제10조 외국관리인의 도산절차에 참여
- 제11조 외국채권자의 도산절차 이용
- 제12조 외국채권자에 대한 도산절차의 통지

제3장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구제수단(relief)

- 제13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 제14조 승인 거부의 근거
- 제15조 외국절차의 승인 신청에 대한 구제수단
- 제16조 외국 주요절차(main proceeding)의 승인시의 구제수단
- 제17조 외국 비주요절차(non-main proceeding)의 승인시의 구제
- 제18조 승인 및 승인시 인정되는 구제수단의 통지
- 제19조 채권자와 채무자의 보호
- 제20조 국내에서의 외국관리인의 소송 개입

제4장 외국법원 및 외국관리인과의 협조

- 제21조 외국법원 및 외국관리인과의 협조 및 직접송달에 관한 권한

제5장 동시병행절차

- 제22조 동시병행절차
- 제23조 채권자의 지급비율

서 문

본법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도산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 (a) 국제도산사건에 관련된 내국과 외국의 법원 및 관할기관간의 협력
- (b) 거래와 투자에 관한 법적 확실성의 고양
- (c) 채권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할 국제도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 (d) 채무자의 재산가치의 보호와 최대화
- (e) 재정적 궁핍에 빠진 사업의 구제 촉진[과 함께 투자를 보호하고 고용 유지 도모]

제1장 총 칙

제1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경우에 적용된다.

- (a)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외국법원이나 외국관리인이 내국(this State)에 협조를 구할 경우,
- (b) 내국에서 [채택국(enacting State)의 도산에 관한 법에 따라] 행한 도산 절차와 관련해서 외국에서 협조를 구할 경우,
- (c)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외국도산절차와 내국에서 [채택국의 도산에 관한 법에 따라] 행한 절차가 동시에 행해지고 있는 경우,
- (d) 외국에 있는 채권자나 이해관계자가 내국에서 [채택국의 도산에 관한 법에 따라] 도산절차를 개시하거나 참가하기를 요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

제2조 정의와 해석규정

본법의 목적상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해석한다.

- (a) “외국절차”(foreign proceeding)란 회사정리나 파산을 목적으로 중간에 임시적으로 개시된 절차도 포함하는 사법 또는 행정절차로서 절차상 채무자의 재산이나 거래관계를 외국법원이 통제하고 감독하는 외국도산에 관한 법에 따라 행해지는 도산절차를 의미한다.
- (b) “외국의 주된 절차”(foreign main proceeding)란 그 채무자의 주된 이익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에서 행해지는 절차를 의미한다.
- (c) “외국의 비주요절차”(foreign non-main proceeding)란 본조 (g)항에서

의미하는 채무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에서 행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d) “외국절차의 개시”(opening of a foreign proceeding)란 절차개시의 명령이 최종적이다. 항고 가능하든 시행할 수 있게 될 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e) “외국관직인”(foreign representative)이란 채무자의 재산이나 거래관계에 대해 회사정리나 파산의 관리 또는 외국절차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도록 외국절차에서 허락받은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하며 중간절차에서 선임된 자도 포함한다.

(f) 외국법원을 지칭하는 “법원”(court)이란 본법에서 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법 또는 이외의 권한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g) “영업소”(establishment)란 채무자가 인적 수단과 재화로 항구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제3조 내국의 국제적 의무(International obligations of this State)

본법이 조약이나 이외의 국제적 합의에서 발생하는 내국의 국제의무와 충돌되는 한도내에 그 조약이나 합의의 의무가 우선한다.

제4조 관할 법원 [또는 기관]

외국절차의 승인과 외국법원과의 협조에 관해 본법에서 말하는 기능들은 [채택국에서 그러한 기능을 하는 특정 법원이나 기관]에 의해 수행한다.

제5조 [채택국법에 따라 파산이나 회사정리를 수행할 자나 기관]의 권한

위의 사람이나 기관은 준거될 외국법이 허용하는 대로 [도산에 적용될 채택국의 법]하에서 절차를 대리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6조 공서조항(public policy exception)

본법상의 어떤 규정도 내국의 공서에 [명백히] 반하면 법원은 그 규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제2장 외국관리인과 채권자의 내국법원 이용

제7조 외국관리인의 내국법원 이용

외국관리인은 본법하에서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을 얻기 위하여 내국 관할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제한된 관할

외국관리인이 본법에 따라 내국의 법원에 소제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외국관리인이나 채무자의 외국재산이나 거래관계에 관해 소제기한 것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내국법원의 관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9조 외국관리인에 의한 [채택국의 도산에 관한 법에 따른] 절차개시를 위한 신청

외국관리인은 내국법하에 절차개시를 위한 조건을 갖추면 내국에서 [채택국의 도산에 관한 법]하에 절차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외국관리인의 [채택국의 도산에 관한 법]하에 절차 참가

외국절차의 승인에 있어 외국관리인은 채택국에서 [채택국의 도산에 관한 법에 따라서] 채무자에 관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채권자의 [채택국의 도산에 관한 법에 따른] 절차에 참여

(1) 본조 제2항에 따라 외국채권자는 내국의 채권자 [내국의 시민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및 등록된 사무소를 둔 자]와 마찬가지로 내국에서 [도산에 관한 채택국법]하에 절차를 개시 또는 참가를 할 동일한 권리(권리를 갖는다.

(2) 외국채권자의 권리가 일반권리(우선 또는 특권적이 아닌 권리)보다 하위의 권리가 아닌 한, 본조의 제1항의 규정은 [채택국의 도산에 관한 법에 따른] 절차에서 권리의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 외국채권자에 대한 [채택국의 도산에 관한 법]에 따른 절차의 통지

(1) [채택국의 도산에 관한 법]하에 절차개시의 통지가 내국법하에서 내국의 채권자에게 요구될 경우, 그 통지는 내국에 거주(resident)하거나 주소를 두거나 (domiciled) 또는 등록된 사무소를 갖지 못하였지만 알려진 채권자에게 전해야 한다.

(2) 법원이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형식의 통지가 더 적합하다고 고려하지 않는 한, 그 통지는 외국채권자 개개인에게 행해야 한다.

(3)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상당한 채권신고 기간을 기재하고 채권신고 장소를 특정하며,

(b) 담보채권자는 담보채권을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c) 내국법과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통지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이외의 기타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절차의 승인과 구제수단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제13조 구제수단을 얻기 위한 외국절차의 승인

(1) 외국관리인은 외국절차와 외국관리인 선임의 승인에 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2) 승인 신청은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a) 외국절차 개시와 외국관리인 선임을 선고한 정식으로 인증된 판정문

(b) 외국절차와 외국관리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외국법원의 증명서

(c) 전항 (a)(b)에서 언급된 증명이 없는 경우, 외국절차와 외국관리인 선임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타 다른 증명.

(3) 제14조에 따라 외국절차는 다음으로 인정된다.

(a) 외국법원이 채무자의 주된 이익이 집중되어서 관할을 갖는 경우, 외국의 주된 절차(main proceeding)로서 인정되며

(b) 채무자가 외국에 제2조 (g)항의 의미에서 영업소를 갖고 있다면, 외국의 비주요 절차(non-main proceeding)로서 인정된다.

(4) 반대의 증명이 없는 한, 채무자의 등록 장소는 주된 이익이 집중된 것으로

로 간주된다.

(5) 제2항에서 언급한 판정서나 증명서가 그 외국절차는 제2조 (a)에서 정의한 절차로 표시하고 그 외국관리인이 제2조 (e)항의 의미로 선임되었다고 표시하고 있다면 법원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

(6) 승인 신청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나 이와 유사한 형식을 지닌 서류의 공증은 불필요하다.

(7) 법원은 승인 신청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서류를 내국의 공식용어로 번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외국절차 승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결정되어야 한다.]

제14조 승인 거부의 근거

외국 절차와 외국관리인 선임의 승인은 다음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

(a) 외국절차가 제2조 (a)에서 정의한 절차가 아니거나 외국관리인이 제2조 (e)에서 의미하는 대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

[(b) 채택국에서 그 채무자의 도산이 [특별히 규제되는 금융서비스 기관의 도산에 대한 채택국법]의 특별한 규제를 받는데, 그 채무자가 그런 기관인 경우]

제15조 외국절차의 승인 신청시 구제수단

(1) 승인 신청시부터 승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은 제17조상의 조건하에 그 조항에서 허용하는 구제수단을 인정할 수 있다.

(2) 법원은 외국관리인에게 내국에서 잠정적 구제수단의 요청에 대해 필요한 통지를 명할 수 있다.

(3) 그러한 구제수단은 제17조 (1)(c)하에서 연장되지 않는 한, 승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를 경과하여 연장되지 않는다.

제16조 외국 주된 절차(main proceeding)의 승인시의 구제수단

(1) 외국 주된 절차의 승인시에,

(a) 채무자의 재산, 권리, 의무 또는 책임에 관한 개별적인 소 또는 절차의 개시 또는 계속은 중지될 수 있으며,

(b) 채무자 재산의 양도, 처분 또는 담보 등의 권리는 정지된다.

(2) 전항에서 언급한 중지와 정지의 범위는 [채택국의 도산에 관한 법]하에 적용되는 예외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3) 외국의 주된 절차의 승인이 있은 후 ()일 이후에야 법원은 외국관리인에게 외국절차상의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현금화, 또는 분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채택국의 도산에 관한 법]에 따라 채무자에 관한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절차가 종료된 후에만 상기 사항을 허용할 수 있다.

제17조 외국의 주된 절차 또는 비주요절차(non-main proceeding)의 승인시의 구제수단

(1) 외국의 주된 절차나 비주요절차의 승인시에 채무자의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국 관리인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은 다음의 구제수단을 포함하는 적절한 구제수단을 허용할 수 있다.

(a) 제16조 (1)(a)하에서 중지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채무자의 재산, 권리, 의무, 또는 책임에 관한 개별적인 소나 절차의 개시 또는 계속을 중지함.

(b) 제16조 (1)(b)하에서 정지되지 않는 한 채무자 재산의 양도, 처분, 또는 담보의 정지,

(c) 제15조에 의해 허용된 구제수단의 연장,

(d) 채무자의 재산과 책임에 관한 증언이나 정보 제출의 강제,

(e) 외국관리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자에게 채무자 재산의 유지와 관리의 위탁,

(f) 내국법하에서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의 허용.

(2) 법원은 외국 비주요절차에 대한 구제수단이 외국 주된 절차의 진행에 해가 될 경우에는 그 구제수단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 승인 및 승인시 인정된 구제수단의 통지

[외국관리인은] [법원이 외국 주된 또는 비주요절차를 제13조 3항에 따라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그 외국관리인에게 다음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승인, 중지와 정지 그리고 제17조하에 인정된 구제수단의 통지를 내국에 주소가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일내에 통지해야 한다.

제19조 채권자와 채무자의 보호

(1) [제15, 16, 17조]하의 구제수단을 허락하거나 거절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 모두와 채무자가 부당한 편견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과 방어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여졌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2) 제15, 16, 17조에 따른 구제수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나 법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할법원은 그 구제수단을 [거부], 수정, 종료시킬 수 있다.

(3) 외국관리인에게 구제수단을 허락하는 법원은 그 구제수단에 적당하다고 고려되는 조건을 불일 수 있다.

제20조 외국관리인의 내국에서 진행중인 소에 개입

외국절차의 승인에 있어 외국관리인은 내국법의 조건에 따라 채무자가 [당사자] [원고 또는 피고]인 소송에 개입할 수 있다.

제4장 외국법원 및 외국관리인과의 협조

제21조 외국법원 및 외국관리인에 대한 협조와 직접 송달에 관한 권한

(1) 제1조에서 언급된 사항들에 대해 내국법원은 외국법원과 외국관리인에게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법원은 외국법원이나 외국관리인들에 대해 직접 송달하거나 직접 정보와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조에서 언급된 사항에 대하여 [채택국법하에 파산이나 회사정리를 관리하는 자나 기관]은 외국법원이나 외국관리인에 대한 그의 권한내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채택국법하에 파산이나 회사정리를 관리하는 자]는 그의 권한내에 외국법원과 외국관리인에 대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3) 협조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이행될 수 있다.

- (a) 법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자의 선임
- (b) 법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방법에 의한 송달
- (c) 채무자의 재산과 거래관계의 관리 및 감독의 조정
- (d) 절차의 순서배정에 대한 법원의 승낙 또는 이행
- (e) [채택국은 추가해서 협력에 관한 다른 형식이나 예를 열거할 수 있음]

제5장 동 시 병 행 절차

제22조 동 시 병 행 절차

(1) 외국 주된 절차를 승인할 때, 내국법원은 채무자가 내국에 [영업소]나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도산에 관한 채택국 법]하에서 그 채무자에 대해 내국에서 절차를 개시할 권한이 있으며, 그 절차는 국내에 있는 채무자의 [영업소]나 [재산]에만 영향을 미친다.

(2) 전항에서 언급한대로 내국에서 절차를 개시할 목적으로 그리고 반대의 증거가 없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은 채무자가 도산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제23조 채권자에 대한 지급비율

[담보채권] [물권적 권리(rights in rem)]의 훼손없이, 타국에서 개시된 도산절차에서 일부 채권을 변제받은 채권자는, 내국에서 개시된 절차에서 같은 순위의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된 것이 비례적으로 그 채권자가 이미 받은 지급액보다 적지 않은 한, 내국의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채택국의 도산법하에] 내국에서 개시된 동일 채권 주장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 없다.

VII. 본고와 직접 관련된 UNCITRAL 주요자료

1. Note by the Secretariat containing newly revised articles of the draft UNCITRAL Model Legislative Provisions on Cross-Border Insolvency (A/CN.9/WG.V/WP.48, 21 Nov. 1996)
2.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Insolvency Law on the Work of its Twentieth Session (Vienna, 7~18 Oct. 1996) (A/CN.9/433)
3. Note by the Secretariat containing revised draft legislative provisions dealing with judicial cooperation and access and recognition in cases

of cross-border insolvency (A/CN.9/WG.V/WP.46)

4. Note by the Secretariat containing a first draft of a guide to enactment of the legislative provisions to be prepared by the Commission (A/CN.9/WG.V/WP.47)
5.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Insolvency Law on the work of its nineteenth session (New York, 1-12 April 1996) (A/CN.9/422)
6.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Insolvency Law on the work of its eighteenth session (Vienna, 30 Oct.-10 Nov. 1995) (A/CN.9/419)
7. Report on possible issues relating to judicial cooperation and access and recognition in cases of cross-border insolvency (A/CN.9/WG.V/WG.42)
8. Note by the Secretariat containing a report on the UNCITRAL-INSOL Judicial Colloquium on Cross-Border Insolvency (Toronto, 2-23 March 1995) (A/CN.9/413)
9. Note by the Secretariat containing a report on the UNCITRAL-INSOL Colloquium on Cross-Border Insolvency (Vienna, 17-19 April 1994) (A/CN.9/398)
10. Note by the Secretariat on Cross-Border aspects of insolvency (A/CN.9/378/Add.4)